



안전한 대금 지급과 상생거래 환경조성의 시작 상생결제제도

청렴
세계
Korea,
a country of integrity



대·중소기업
농어업협력재단
캐릭터 동아, 빈이

상생결제제도란?

대금 결제 시,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위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,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제도(결제수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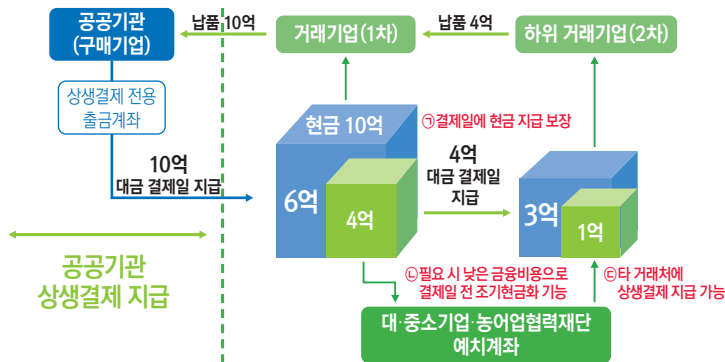
추진근거 : 상생결제의 관리·운영 및 보급·확산 지원(상생협력법 제20조)
국정과제 33-불공정거래, 기술탈취 근절 및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
(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)

제도 구조

공공기관이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 시 거래기업은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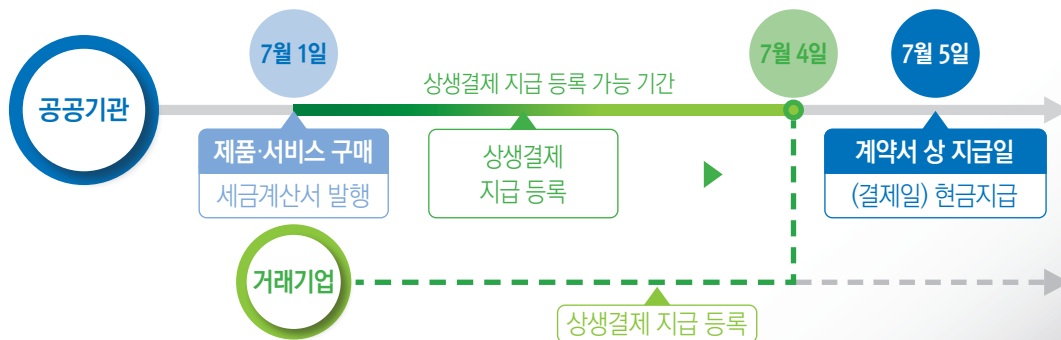
하위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결제일까지 예치계좌에 보관 후 자동이체 지급
하도급대금지급 근거법령 : 전자조달법 제9조의2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-8호

〈상생결제 이용 예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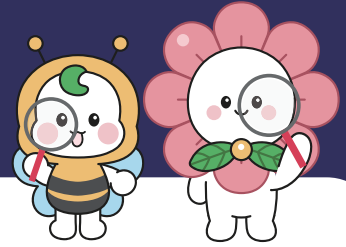
- ① 일반 물품구매비, 용역비 등 결제 시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(시스템에 지급 내역 등록)
- ② 거래기업(1차기업)은 결제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,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
* 상생결제 이용 시 거래기업 혜택 부여(세액공제, 금융수익 등)
- ③ 하위 거래기업은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, 필요시 미리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(조기현금화 가능)

〈상생결제 지급절차 예시〉



* 국가계약법 근거 대가 지급 시 검수완료 3~5일 이내 지급기준으로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

안전한 결제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첫걸음 상생결제제도와 함께 시작합니다.



상생결제를 이용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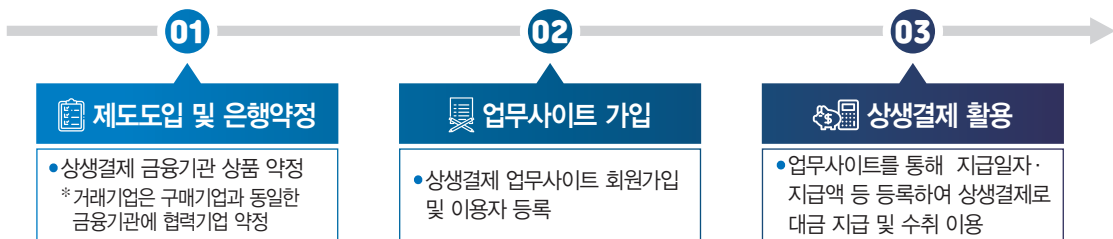
- 안전한 대금회수**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하위거래기업도 대금회수를 보장받고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금 유동성 개선** 필요시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할 수 있으며, 거래처에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세액공제 및 금융수익 발생** 거래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일 경우 하위거래기업에 지급한 상생결제 활용금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출이자(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) 및 장려금(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)을 거래기업에 지급하여 금융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용방법

구매기업 금융기관 약정 체결·도입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를 통해 대금 지급 실행

상생결제 운영 금융기관(12개) : 국민·기업·농협·신한·우리·제일·하나·경남·대구·부산·전북은행, 현대커머셜
상생결제 이용실적에 대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(업무사이트에서 실적조회 가능)

거래기업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협력기업 약정 체결, 상생결제로 대금 수취 및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가능



문의

상생결제 콜센터 1670-0833

홈페이지 | 제도안내 | www.winwinpay.or.kr
| 업무사이트 | www.kefci.com